당신의 봄

## 개인용

# 자동차보험 약관

2020.6.1 개정

보험약관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 애니카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성화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회사로서 지난 60여 년간 고객님의 생활에 안심과 평안을 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이제 삼성화재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최고의 금융사로 인정할 만큼 견실하게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객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격려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삼성화재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열정과 패기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삼성화재는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보험사를 능가할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보험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과만 좋은 기업이 아니라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기업 활동 속에서 고객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진정성이 있는 기업이 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늘 한결같은 고객님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삼성화재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해 가시길 기원합니다.

SAMSUNG anycar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자동차보험 알아둡시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나요?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충분히 보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현재의 생활이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 * 의무보험이란 뭔가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만원까지)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 발생 시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만으로는 충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따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최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2천만원)까지가 의무보험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 내게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이 낸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나일 경우에는 가해자의 대인/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시면 내가 낸 자동차 사고에서 나와 동승자(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의 동승자)의 신체 피해, 내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나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대인배상Ⅰ 만 보상).

## *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만 25세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자의 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해 둔 약관이기에 만 26세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 대인배상Ⅰ은 운전자 연령에 무관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대물배상도 대인배상Ⅰ과 같이 운전자 범위와 연령 제한을 위반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인배상Ⅰ과 함께 대물의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대인배상Ⅰ과 달리 운전자 범위와 연령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삼성화재 콜센터(1588-5114)로 전화하시면 정성껏 도와 드립니다.

## * 차량의 부속품을 도난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 장치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부속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자동차의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보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계약 및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산출됩니다.
차종, 연령 및 가입금액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 보험료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할 경우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Eco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시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 *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분기마다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정합니다.

–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하며, 계약 체결 이후 사고 발생시점까지 차량가액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생긴 손해액' 의 일정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 시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의무) | 대물배상 (임의) | 자기신체 사고 | 무보험차 상해 | 자기차량 손해 |
|---|---|---|---|---|---|---|---|
| 음주 | 사고 부담금 3백만원 | 사고 부담금 1억원 | 사고 부담금 1백만원 | 사고 부담금 5천만원 | 보상 | 보상 | 면책 |
| 무면허 | | | | | | | 면책 |
| 뺑소니 | | | | | | | 보상 |

## *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상이 되나요?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위배될 경우에도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단, 취급업자보험 보상한도 초과 시).

- 차주에게 운행자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취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상해 급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따라서, 다른보험 등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가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어떤 경우에 보상이 안 되나요?




계약 시 설정한 운전자 범위나 연령에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대인배상 I 의 한도만 보상), 고의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자살과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약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긴급출동 서비스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나요?




차량견인, 타이어교체, 배터리충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출동은 서비스 횟수 제공한도가 있어서 보험 기간 내 6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비상급유서비스는 보험 기간 내 2회만 제공됩니다.
- 보험 기간 중 서비스종류를 불문하고 서비스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 | CONTENTS |


### 1.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개요

▶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의 구성 ····· 18
▶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 ····· 20

### 2.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요약

▶ 보상범위 및 내용
■ 대인배상 ····· 24
■ 대물배상 ····· 27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31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33
■ 자기차량손해 ····· 34
▶ 보상받는 사람(피보험자) ····· 34
▶ 주요 특별약관 ····· 37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39
▶ 보험료가 할인되는 경우 ····· 41
▶ 자동차 사고 시 대처 요령 ····· 43
▶ 계약 후 주의사항 ····· 49


(주의사항)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약관 목차

| 범례 | ■ 대인배상 • ■ 대물배상 • ■ 자기신체사고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자기차량손해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 53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55


##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제1장 배상책임

####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 58
제4조(피보험자) ····· 58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58


####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 58
제7조(피보험자) ····· 58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59


####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60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60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61


###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 61
제13조(피보험자) ····· 62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62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62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63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 63
제18조(피보험자) ····· 64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64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65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제22조(피보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 · · · · · · · · · · · · · · · · · · · · · · 66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 · · · · · · · · · · · · · · · · · · · · · · 67

##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70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70
제27조(제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72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72
제31조(제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 · · · · · 75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 · · · · · · · · · · · · · · · · · · · · · 76
제37조(공탁금의 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 · · · · · · · · · · · · · · · · · 78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79
제41조(청약 철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제42조(보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제43조(사고발생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80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80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81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81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 · · · · · · · · · · · · · · · · · · 82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 · · · · · · · · · · · · · · · · · · 82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83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 · · · · · · · · · · · · · · · · · · 83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 · · · · · · · · · · · · 83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 · · · · · · · · · · · · · · · · 84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85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 86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 · 86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 · · · · · · · · · · · · · · 87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 · · · · · 87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 · · · · · · · · · · · · · · · · · · · · 87
제60조(분쟁의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87
제61조(관할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제62조(준용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별 표〉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 · · 89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 · · · · · · · · · · · · · · · · · · 97
〈별표 3〉 과실상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98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 · · · · · · · · · · · · · · · 99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 · · · · · · · · · · · · · · · · · 99

# 특별약관 목차

| 범례 | ■ 대인배상 • ■ 대물배상 • ■ 자기신체사고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자기차량손해

## Ⅰ.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9] 운전자 연령 ····· 115~121
만21세이상, 만22세이상, 만24세이상, 만26세이상,
만28세이상 만30세이상, 만35세이상, 만43세이상,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0] 운전자 연령 만 49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122
[11] 운전자 연령 만 5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123
[12]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4
[13] 기명 피보험자 및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5
[1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5
[1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6
[16]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7
[17]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127
[18]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 128


## 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보상 확대


[19]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130
[20] 상해간병비 지원 특별약관Ⅲ ····· 131
[21] 주말 · 휴일 확대 보상 특별약관Ⅱ ····· 132
[22] 상급 병실료 지원 특별약관 ····· 132
[23] 성형 · 치아보철비용 지원 특별약관 ····· 133
[24] 안심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특별약관 ····· 134


## Ⅲ.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25] 교통비 지원 특별약관 ····· 135
[26]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 136
[26-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 137
[27] 차량 신규등록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 138
[28] 원격지사고 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 138
[29] 외제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 139
[30]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 139
[3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 140
[3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 143
[3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Ⅱ ····· 146
[34]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 149
[35] 차량 하체보호(언더코팅)비용 지원 특별약관 ····· 150

## Ⅳ. 사고처리 시 소요되는 비용


[36]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 ····· 152
[36-1]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Ⅳ ····· 155
[36-2] 방어비용한정 추가특별약관Ⅳ ····· 155


## Ⅴ. 긴급출동 서비스


[37]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 155
[37-1]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 157
[37-2] 차량 진단 Door to Door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157


## Ⅵ. 보험료 납입


[38]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59
[39]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160
[4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60
[41]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 162


## Ⅶ. 친환경 상품


[42]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측정장치형) ·· 163
[43]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실사형) ····· 166
[43-1] Eco 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별약관 ····· 168
[44] Eco e-약관 등에 관한 특별약관 ····· 169
[45] Eco 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 169
[46]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171


## Ⅷ. 기타


[47] 나눔 친서민 특별약관 ····· 173
[4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75
[49]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176
[50]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77
[51]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177
[52]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 177
[53] 차량용영상기록장치에 관한 특별약관(무선통신형) ····· 178
[5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80
[55]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우대 특별약관 ····· 181
[5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81
[57]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 182
[58] 자녀사랑 할인 특별약관 ····· 183
[59]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183
[60]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 ····· 184
[61]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185
[62] 티맵 착한운전 할인 특별약관 ····· 186
[63] 애니핏 걸음수를 활용한 할인 특별약관 ····· 187

-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의 구성
-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
- 보험료의 할증

# 1.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개요

| 범례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통약관 + 각종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보통약관

• 타인에게 상해, 사망 또는 차량 및 재물파손 등의 손해를 가한 경우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 운전자 또는 가족의 상해, 사망, 차량 파손, 도난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 일반사항

+

## ■ 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 확대 보상 | 자기차량손해 확대 보상 | 사고처리 시 비용보상 |
|---|---|---|

등

## 보통약관

사고 시 보상 내용 +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 청약 철회 등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자동차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보통약관)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 대물배상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 본인, 가족의 상해 및 사망
- 자기차량손해 : 자신의 차량 파손(차대차 충돌 한정) 및 도난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

### ■ 보험계약 성립, 청약 철회 등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용

**일 반 사 항 :**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보험료 계산방법 등

**기 타 사 항 :** 보험계약의 소멸과 승계, 보험료 환급 및 보험금의 분담, 보험회사의 대위 등

**보험금지급 기준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 기준과 과실상계 등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등 보통약관의 상세한 내용은 45페이지 이하의 보통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특별약관도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사고처리 시 비용 지원, 긴급출동, 보험료납입 등 특별약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107페이지 이하)을 참조하십시오.

#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

**ㄱ**

**가족**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註) 자동차보험에서 형제나 자매, 조부모, 손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운전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 정지 중 혹은 운전금지 중 운전하는 것을 포함

**면책** 특정의 사안(예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

**ㅂ**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내용 및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

**보험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價額表)에 따른 차량가격
(註) 중고차시세 등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보험금** 자동차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ㅅ**

**상해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보통약관 p 94)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①신호 · 지시위반사고, ②중앙선침범사고, ③속도위반사고,
④추월방법 위반사고, ⑤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⑥횡단보도사고,
⑦무면허사고, ⑧주취/약물복용사고, ⑨인도침범사고, ⑩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⑫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

**ㅇ**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인배상 I 및 1사고당 2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함

(註)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 혹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함

**ㅈ**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한 법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ㅌ**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註) 보상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특별약관도 있습니다.

**ㅍ**

**피보험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보험금 청구권자



**ㅎ**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보통약관 p 102)

# 보험료의 할증

사고발생시 다음의 요인으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요소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변동 x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변동

1.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내용(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사고점수 부과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변동으로 보험료 할증 가능)

2.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사고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피보험차량별 개별평가)
   * 직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율 적용

따라서, 사고발생시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특히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보험료 50만원을 납입하던 고객이 직전 3년간 무사고(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약 10% 할인적용)였다가 지급보험금 100만원의 물적사고 발생시,
  -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한 경우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만 변경 적용되어 기존대비 8만 3천원 할증
  -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50만원 가입한 경우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모두 변경 적용되어 기존대비 약 11만 2천원 할증

| 구분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 | |
|---|---|---|
| | 200만원 | 50만원 |
|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율 | 변동 無 | +5%[1] (1등급 변동)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2] | – 직전3년 무사고 할인 미적용 : +10%<br>– 사고건수 할증적용 : +6% | |
| 총 보험료 | 58.3만원 | 61.2만원 |

1) 실제 개인별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할증률은 상이
2) 직전3년간 무사고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할인미적용에 따른 요율인상이 없으나, 사고 횟수 누적에 따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도 변동

※ 상기 예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 갱신 시점의 실제 적용률을 따름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 갱신계약 체결시, 물(物)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시 예)**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할증

- 보상범위 및 내용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상받는 사람(피보험자)
- 주요 특별약관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2.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요약

| 범례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보통약관 P52



## ■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 보상받는 금액

### 1.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3천만원 ~ 최저 50만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애 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액(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1천만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 2.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 : 무한)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 후유장애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 ■ 주의 사항

대인배상Ⅰ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 발생 시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가입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 기준으로 10일까지 1만 원, 이후 매일 4천 원씩 가산되며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보통약관 P52



## ■ 피해자 직접청구권

1. 피해자 직접청구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관련내용을 안내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표준약관 제30조 제1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시 필요서류**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 보통약관 P52



## ■ 경미사고에 대한 마디모 의뢰 안내

1. 마디모(MADYMO)란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을 말하며, 운전자는 경찰서에 피해자의 상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신청대상 사고**(차량속도5~10km 미만)

- 차량 정차 후 서서히 출발 또는 후진중 접촉한 사고
- 주행 중 스치듯 접촉하여 차체표면이 살짝 긁히는 사고
- 승용차 등 접이식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사고
- 교통사고 후 수일이 경과한 뒤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 위 항목 이외에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는 사고

2. 운전자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후 사고동영상을 첨부하여 마디모를 의뢰한 경우, 보험회사는 마디모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

《《 보통약관 P52



## ■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보상

## ■ 보상받는 금액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2천만원 (대물확대특약 : 3/5/7천만원, 1/2/3/5/10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

**대물배상**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 ■ 주의 사항

대물배상(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 기준으로 10일까지 5천 원, 이후 매일 2천 원씩 가산되며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대물배상 《《 보통약관 P52



## ■ 과실 적용 프로세스

1. 과실 비율의 적용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 관련)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과실비율 산정 방법**

①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예상과실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사고유형이 ①에 없거나 ①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

③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

2. 사고당사자가 과실비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보험회사와 상담

보험회사,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접수

위원회 심의 결정 → 심의결정 수용 또는 소송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본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이 완료될때까지 보상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소율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물배상

《《 보통약관 P52



## ■ 경미손상 수리기준

1. 경미손상의 적용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 관련)에 근거하여 수리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경미손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퍼(플라스틱 소재)**
- 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없음)
- 2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 3유형 :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 없음)

**② 기타 외장부품** ( '19.5.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
- 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 2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외판소재 손상 없음)
- 3유형 : 도장막과 함께 외판 소재가 손상되어 퍼티 및 판금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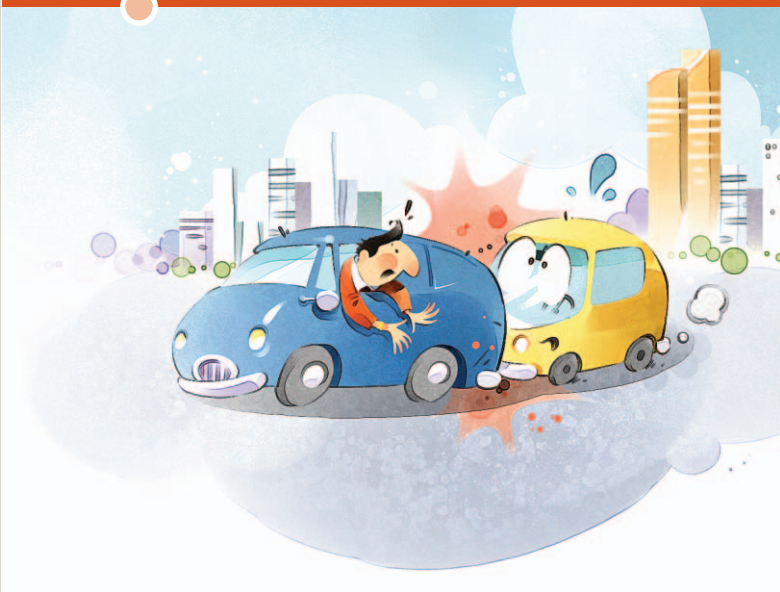
2. 경미손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시행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보다 큰 경우와 복원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환작업을 검토합니다.

**① 범퍼(플라스틱 소재) 수리방법**
- 1유형 : 범퍼 미탈착, 소재복원 없음, 폴리싱(광택작업)
- 2유형 : 손상부위에 따라 범퍼 탈착 결정, 소재복원 없음, 보수도장
- 3유형 : 손상부위에 따라 범퍼 탈착 결정, 플라스틱 퍼티이용 복원수리, 보수도장

**② 기타 외장부품 수리방법** (예시)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
- 1유형 : 판금작업 불필요, 폴리싱(광택)
- 2유형 : 판금작업 불필요, 보수도장
- 3유형 : 퍼티 및 판금작업을 통한 복원, 보수도장

**※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di.or.kr/user/nd91850.do)**

# 대물배상 《《 보통약관 P52



## ■ 보통약관〈별표2〉대물배상 대차료 지급기준의 차종 구분

※ 아래는 대물배상 대차료 산정 시 차종 구분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경형 (초소형) | 경형 (일반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배기량 1천cc 미만 | 배기량 1,600cc 미만 | 배기량 2,000cc 미만 | 배기량 2,000cc 이상 |
| 승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 승차정원 15인 이하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승차정원 36인 이상 |
| 화물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배기량 1천cc 미만 | 적재정량 1t 이하 | 적재정량 1t 초과 5t 미만 | 적재정량 5t 초과 |
| 이륜 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 | 배기량 100cc 이하 |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 배기량 260cc 초과 |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보통약관 P55, 특별약관 P118 》》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보상을 받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 보상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 보상받는 금액

### 자동차상해 특약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중 1가지 선택 가입
-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
  (부상)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중 1가지 선택 가입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보통약관 P55, 특별약관 P118 》》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단독사고(공제액 없음)로**

-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사망)보험가입금액 : 1천 5백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중 1가지 선택 가입
-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
-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쌍방사고(공제액 있음)로**

-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후유장애, 부상의 경우 각 해당급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에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사고보상 예시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 남편이 3개월간 입원, 경추 염좌로 총 5백만 원의 치료비 발생
  (경추 염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등급 12급임)
-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의 차이

| 구분 |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시<br>보험가입금액 :<br>사망 1억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 | |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br>보험가입금액 :<br>사망 1억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 | |
|---|---|---|---|---|
| 내용 | 3개월간 치료비 | 500만 원 | 12급 한도인 80만 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 80만 원 |
|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 280만 원 | | |
| | 위자료 | 15만 원 | | |
| 보험금 | 총 795만 원 지급 | | 총 80만 원 지급 | |
| 보험금의 차이 | 715만 원 | | |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통약관 P57




## ■ 보상을 받는 경우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 피보험자가 운전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때
- 피보험자가 보행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무보험 또는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때

## ■ 보상받는 금액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2억 원 또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 ■ 주의 사항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 보통약관 P60



## ■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차에 직접손해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 보상(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및 도난 사고에 한정)

## ■ 보상받는 금액

보험가입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보험가입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자기부담금 = 보상받는 금액

- **보험가입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차량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보상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함)
- **비용**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자기부담금** : 자동차 수리비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비율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한도 금액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 ■ 자기부담금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의 경우 (한도 :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

| 사고 사례 | 최종 자기부담금 |
|---|---|
| ① 손해액이 500만 원 (손해액의 20%는 100만 원) | 50만 원 |
| ② 손해액이 150만 원 (손해액의 20%는 30만 원) | 30만 원 |
| ③ 손해액이 50만 원 (손해액의 20%는 10만 원) | 20만 원 |

# 보상받는 사람(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합니다.

##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
2.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3.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사람.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이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사람
   (다만,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운전보조자를 포함)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이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



1.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보상받는 사람(피보험자)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
   (다만, '1' 또는 '2'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음)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하에 보험가입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4. 위 '1' 또는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가입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

※ 또한, '3'과 '4'의 사람 중,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이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 자기차량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

# 주요 특별약관

보통약관의 보상 내용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보상을 만족스럽게 받을 수는 없으므로 만일에 대비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더욱 폭넓게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가입하신 특약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 보장 확대



특별약관 P.131

### 상해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Ⅲ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가입한 상품(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의 지급 기준에 따라 상해급수별 0만 원부터 500만 원 지급**

특별약관 P.132

### 주말 · 휴일 확대 보상 특별약관 Ⅱ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피해를 입어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확대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예) 자동차상해 2억 원 및 이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최고 4억 원(2억 원×2배)까지 보상

특별약관 P.132

### 상급 병실료 지원 특별약관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가 특실 등 상급 병실 이용 시, 일반병실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을 **30일 한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주요 특별약관

## ■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P149

###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해자 및 가해차량 불명사고, 자기 차량의 단독사고로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장



특별약관 P136

###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자동차 사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국내산 자동차 **렌트비 보장.**

특별약관 P135

### 교통비 지원 특별약관

자동차 사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수리완료까지,
보험 가입 시 정해 놓은**(1/2/3만 원 중 택일) 교통비를 30일을 한도로 지급**

(예) 교통비 지원 3만 원을 가입하였고 사고로 15일간 차량을 수리 받게 되는 경우
➔ 3만 원×15일 = 45만 원 보상

## ■ 사고처리 관련 및 기타



특별약관 P146

###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

자동차 사고로 타인 사망, 상해 시 형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손해 발생 시 가입한 상품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의 지급 기준(한도)에 따라 아래의 비용 지급

-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특별약관 P128

###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대리운전(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운전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 시 정해 놓은 연령 및 운전자한정과 상관없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보상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중 내용이 난해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의 5조, 8조, 14조, 19조, 23조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상운송행위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1.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운행실비(유류비, 유지비)만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 2회 이상이어야 하며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또는 대여

- 직접 사용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대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장기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유상운송을 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대인배상II)

1.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요건

- 업무 중 재해
-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2.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가 피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며, 피용자가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와 피해자는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자이고, 피해자가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합니다.

# 애니카서비스

| 애니카서비스 | 특약 가입 시 무상제공 | 서비스 제한 및 추가비용 |
|---|---|---|
| 비상구난 | • 구난 소요작업시간 30분 이내<br>• 기본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견인 | • 작업시간 30분 초과 시 실비<br>• 2.5t 이상 또는 2대 이상의 구난형특수자동차로 견인 시 비용 |
| 긴급견인 | • 10km 이내 가까운 정비소로 견인 | • 10km 초과 1km당 2천원<br>• 차량 총 중량 3t 초과 차량<br>• 구조변경차량 |
| 비상급유 | • 일반휘발유 또는 경유 1일 1회 3리터 한도<br>• LPG, 연료전지차, 전기차는 10km 이내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 • 3리터 이상 실비<br>• 10km 초과 1km당 2천원 |
| 배터리충전 | • 시동용배터리 임시 충전<br>• 서비스제공 불가한 일부 전기차는 견인제공 | • 배터리 교환 등 비용<br>• 10km 초과 1km당 2천원 |
|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 • 예비타이어 소지 시 교체<br>• 타이어 펑크시 1개부위 수리 | • 예비타이어 미소지 시<br>• 펑크부위 1개 초과 시 |
| 잠금장치 해제 | • 운전석 문 잠금장치 해제 | •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br>• 외산차량 및 특수잠금장치나 사이드에어백 장착 차량<br>•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 원상복구비 |
| 공통 | • 보험기간 중 6회 제공 (단기계약은 3회 제공)<br>• 비상급유는 보험 기간중 2회 제공 | • 도서, 산간 등 서비스 제공 제한 지역<br>• 차량구조변경, 적재물 등으로 서비스제한 차량 |

※ 애니카서비스 기본형 기준

# 보험료가 할인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운전하는 사람과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운전하는 사람 〉**

- 나이(연령)
- 남녀(성별)
-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 **법규위반경력**
- **사고 발생실적 또는 손해실적**
  (예 : 최근3년간 사고유무)

(등)

**〈 자 동 차 〉**

- 자동차의 종류, 모델
- 배기량(예 : 2,000cc)

(등)

- 보험가입금액
- 사용용도

(등)

▶ 다음 해의 보험료를 할인받으시려면 법규준수와 무사고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특약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수)를 줄임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P124~127

☞ 각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정해집니다.

| 운전할 수 있는 사람 / 특 별 약 관 | 기명 피보험자의 본인 | 배우자 | 부모·자녀 | 배우자의 부모 | 사위·며느리 | 형제·자매 | 지정1인 |
|---|---|---|---|---|---|---|---|
| 기명 피보험자1인 | ○ | × | × | × | × | × | × |
| 기명 피보험자1인 + 지정 1인 | ○ | × | × | × | × | × | ○ |
| 부부 | ○ | ○ | × | × | × | × | × |
| 가족 | ○ | ○ | ○ | ○ | ○ | × | × |
| 가족 +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미가입 | ○ | ○ | ○ | ○ | ○ | ○ | ○ |

(주1) ○는 보상하는 경우이며, ×는 운전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경우(대인배상 I 은 보상)를 말합니다.
(주2) 가족이란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 보험료가 할인되는 경우

## 2. 운전자의 나이를 정함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P109~116

☞ 운전자의 나이를 만21세 또는 만24세, 만26세, 만30세, 만35세, 만43세, 만48세 이상으로 운전하겠다고 보험회사와 약정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정해집니다.




(예)

| 동생이 운전 할 때 | 부모님이 운전 할 때 | 내가 운전 할 때 |
|---|---|---|
| 운전자 나이 만24세 이상 | 운전자 나이 만48세 이상 | 운전자 나이 만26세 이상 |

우리 가족 모두 운전 할 때 : 운전자 나이 만24세 이상

**참고**



❖ 나이와 범위수를 약정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미리 보험회사와 정해 놓은 운전자가 아닌 다른 분이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만일의 자동차 사고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P115

# 자동차 사고 시 대처 요령

## ■ 사고현장 사고처리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즉시 정차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 확인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 2. 부상자구호

- 부상상태 확인
-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 조치 후 구급차량으로 후송





### 3. 정황증거 확보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핸드폰, 카메라 등)
- 사고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등)
-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 4.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 정황증거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 5. 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 없이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사고 시 대처 요령

## ■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신고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통보(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 사고자 / 관계인

**| 사고 통보 및 접수 |**

콜 센 터 : 1588-5114(내선번호 1번)
홈페이지 : (www.samsungfire.com)




**2. 사고접수**

삼성화재




**3. 사고배당**

사고 담당자 지정



**4. 사고조사**

현장 / 경찰서 / 목격자 / 가피해자



**5. 피해상황 확인**

병원 / 정비공장



**6.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치료비 / 수리비 / 합의금 / 기타

**참고**



❖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에 통보할 내용

1.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차량번호
2.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피해사항
3. 경찰서 신고여부 및 수리공장 또는 입원병원 등

## ■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일반 교통사고)



1. 사고 운전자 경찰서 신고 및 경찰 출동

2. 현장 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3. 일반 교통사고 공소권이 없는 사고

가 해 자 :
진술서 작성,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 해 자 :
진술서 작성, 진술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4. 스티커 교부 / 면허증 반환






5. 사고 운전자 귀가

**참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 (사망 · 중상해, 도주 및 특례법상 12개항 위반사고)



1. 사고 운전자 경찰서 신고 및 경찰 출동




2. 현장 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3. 사망 · 중상해, 도주 및 특례법상 12개항 위반 사고 공소권이 있는 사고

**가 해 자 :**
진술서 작성,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 해 자 :**
진술서 작성, 진술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4. 영장 / 지휘 청구




5. 검사 수사지휘 결과



6. 법원 판결
벌금, 징역, 금고, 집행유예 등

## ■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면, 진찰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보상직원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1. 병원으로 후송

**치료비 지불보증**
삼성화재/가해자




2. 진찰 후
치료방법 결정



3-A. 입원 치료
타병원으로 전원 가능



3-B. 통원 치료



3-C. 치료 후 귀가




**삼성화재**
보상직원 면담/합의

## ■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으로 정비공장에서 수리할 경우, 삼성화재는 정비공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내역을 검토한 후 수리를 의뢰합니다.



1. 교통사고 현장

자력 이동 / 견인



2. 정비공장 입고 및 수리

**견적서 제출**
부품/수리공임/유리/기타

자동차 소유자 / 삼성화재

**승인 후 수리요청**



3. 출고

**참고**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도 중요하지만 평상 시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 후 주의사항

계약 후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면 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바로 알리십시오.

알려주시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알리는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운전자의 연령 또는
운전자의 범위 변경




새로운 차량번호로 변경




새 차 구입 및 차량 교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또는 고가의 부속 구입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 내용 및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통약관

| 범례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약관내 오른 쪽 비고란은 고객분들이 약관을 보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요 및 용어설명을 게재해 놓은 부분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약관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 53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55

##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비고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공제계약**이란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단체의 공제에 가입한 계약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 ·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비고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운전'**은 차량의 본래의 사용방법(승객 또는 화물의 운송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의미로 관리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비고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제2조(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대상
법정정원 10인승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 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비고

|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 다.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구 분 | 내 용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보통약관

##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제1장 배상책임

####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 · · · · 58
제4조(피보험자) · · · · · 58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 · · · 58


####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 · · · · 58
제7조(피보험자) · · · · · 58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 · · · 59


####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 · · · 60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 · · · 60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 · · · 61


###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 · · · · 61
제13조(피보험자) · · · · · 62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 · · · 62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 · · · 62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 · · · 63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 · · · · 63
제18조(피보험자) · · · · · 64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 · · · 64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 · · · 65


####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 · · · 66
제22조(피보험자) · · · · · 66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 · · · 66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 · · · 67

*비고

# 제1장 배상책임

## 제1절 대인배상 I

###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의해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 I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고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 합니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유상운송이라 하며, 차종에 따라 특약가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 유상운송 위험 담보 특별약관 참조

*비고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1사고당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나. 1사고당 5,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제1절 자기신체사고

###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비고

제10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용(사고 증거 확보 및 소송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때문에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지급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도난 시 운전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1. 제 7 조의 대인배상 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 7 조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1)

(*1) '피보험자의 부모'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자녀'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 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 · 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5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나. 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위 15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 보험금 | = | 실제 손해액 | + | 비용 | − | 공제액 |
|---|---|---|---|---|---|---|

1.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 1~4〉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별표 3〉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다만, '3'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비고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등을 의미하므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고

##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비고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보험금 | =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 | 비용 | − | 공제액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제3절 자기차량손해

###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2)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비고
(*1) '사고'라 함은
ㄱ.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를 말합니다.
(*3)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 퇴근 시간대(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 · 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 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비고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 '마약 · 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고

(*1)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2)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보험금 | =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 | 비용 | −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1)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2)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 보통약관

##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 · · · · · · · · · · 70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 · 70
제27조(제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72

###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 · · · · · · · · · 72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 · 72
제31조(제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74

###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 · · · · · · · · · · · · · · · · · · · · · · · 74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 · · · · · · · · · · · · · · · · · · · · 75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 · · · 75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 · · · · · · · · · · · · · · · · · · 76
제37조(공탁금의 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76

##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1.「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 2.「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 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 4.「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비고

**연 단위 복리란**
이자 계산 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 100원/ 이자율 : 연 10%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 4. 사고 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 |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 ○ |
| 6.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 | ○ |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사실증명서 | | | ○ | | |
|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이전서류 | | ○ | ○ | | |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

*비고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비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란 아무런 근거 없이 사고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손해액 입증 자료 등의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불리함을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 등 과실비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정기금'**이란 손해배상금 등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Ⅰ·Ⅱ | 대물배상 |
|---|---|---|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2. 손해보상청구서 |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비고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Ⅰ ·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비례보상**(예시)
피해차량 손해액 : 100만원, 계약A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계약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 사고로 계약 A, B가 부담할 전체 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B의 부담금액
  A : 100만원x100만원 /(100만원+50만원) = 666,670원
  B : 100만원x50만원 /(100만원+50만원) = 333,330원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비고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예시)
A차량(과실비율 20%)과 B차량(과실비율 80%)의 과실로 C차량에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20% = 20만원
B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80% = 80만원

##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해당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적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이란
경제적 어려움, 보험지식 및 정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 등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비고

##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 · 절충 ·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 제37조(공탁금의 대출)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하고, **공탁금**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기 간 | 지급이자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보통약관

## 제4편 일반사항

###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 · · · 78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 · · 78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 · · · 79
제41조(청약 철회) · · · · · 79
제42조(보험기간) · · · · · 79
제43조(사고발생지역) · · · · · 80


###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 · · · 80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 · · · 80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 · · · 81


###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 · · · 81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 · · · 82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 · · · 82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 · · · · 83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 · · · 83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 · · · · 83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 · · · 84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 · · · 85


###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 · · · · 86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 · 86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 · · · 87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 · · · 87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 · · · · 87
제60조(분쟁의 조정) · · · · · 87
제61조(관할법원) · · · · · 87
제62조(준용규정) · · · · · 87

*비고

#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광기록매체**란
CD, DVD 등 레이저광을 이용하여 기록·재생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보험기간 |
|---|---|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2. 예외 :<br>**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2)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비고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비고

(예시) 보험기간 (2016.7.1일부터 2017.7.1일까지)




##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

*비고

**'공동불법행위'** 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대채무자'** 란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호간의 구상권'** 이란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100%이행한 경우,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A차량(과실비율 20%)과 B차량(과실비율 80%)의 과실로 C차량에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B차량 소유자가 C차량 소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을 A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비고

합니다.

##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 365 (윤년 366)

*비고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54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해당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비고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하는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비고

**법정대리인**이란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후견인)를 말합니다.

##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

*비고

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비고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란**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 〈별 표〉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 · · 89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 · · · · · · · · · · · · · · · · · · · 97
〈별표 3〉 과실상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 · · · · · · · · · · · · · · · · 99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 · · · · · · · · · · · · · · · · · · 99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별표1〉의 나이(연령)는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 항목 | 지급 기준 |
|---|---|
| 1. 장례비 | **가. 지급액 :** 5,000,000원 |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br>(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br>(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br>**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름. |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 방법 :**<br>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나.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음.<br>〈산식〉<br>(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br>〈용어 풀이〉<br>① **'라이프니츠 계수'**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으로 해당금액의 원금에서 복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br>② 라이프니츠 계수의 월수 계산 시 월미만 일자는 모두 합산하여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1개월을 가산합니다.(30일 이하는 미반영)<br>**나.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br>(1) 유직자<br>(가) 산정대상기간<br>**① 급여소득자 :**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br>**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br>(나) 산정 방법<br>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br>**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br>가) **급여소득자**<br>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br>〈용어 풀이〉<br>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

| 항목 | 지급 기준 |
| --- | --- |
| 3. 상실수익액 | 〈용어 풀이〉<br>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br>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br><br>나) **사업소득자**<br>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br>〈산식〉<br>{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br>(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br>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 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br>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br>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br>〈용어 풀이〉<br>①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용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br>②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이라 함)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을 말합니다.<br>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br>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br>〈용어 풀이〉<br>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br>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br>〈산식〉<br>(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br>※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br><br>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br>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 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 항목 | 지급 기준 |
|---|---|
| 3. 상실수익액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br>〈용어 풀이〉<br>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br>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br>**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br>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br>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br>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br>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br>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br>(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br>(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br>(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br>(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본인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br>(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br>〈용어 풀이〉<br>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 ·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br>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 ·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br>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기준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 평균을 말함<br>(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br>(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br>(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br>(6) 외국인<br>(가) 유직자<br>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br>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br>(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br>**다. 생활비율 : 1/3**<br>**라. 취업 가능월수** |

| 항목 | 지급 기준 |
|---|---|
| 3. 상실수익액 | (1)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함.<br>(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br>〈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br>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br>62세부터 67세 미만 / 36월<br>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br>76세 이상 / 12월<br>(3) 취업 가능 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 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br>(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br>(5) 외국인<br>(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br>(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br>(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br>(*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br>(*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br>**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br>〈산식〉<br>$\frac{1}{(1+i)} + \frac{1}{(1+i)^2} + \cdots\cdots + \frac{1}{(1+i)^n}$<br>i = (5/12)%, n = 취업 가능월수 |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항목 | 지급 기준 |
|---|---|
| 1. 적극 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br>**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br>(1) 입원료<br>(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br>(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1. 적 극 손 해</td><td>(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br>(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 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br>(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td></tr>
<tr><td>2. 위자료</td><td>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br>나. 지급 기준 :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table>
<tr><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r><td>1급</td><td>200만 원</td><td>8급</td><td>30만 원</td></tr>
<tr><td>2급</td><td>176만 원</td><td>9급</td><td>25만 원</td></tr>
<tr><td>3급</td><td>152만 원</td><td>10급</td><td>20만 원</td></tr>
<tr><td>4급</td><td>128만 원</td><td>11급</td><td>20만 원</td></tr>
<tr><td>5급</td><td>75만 원</td><td>12급</td><td>15만 원</td></tr>
<tr><td>6급</td><td>50만 원</td><td>13급</td><td>15만 원</td></tr>
<tr><td>7급</td><td>40만 원</td><td>14급</td><td>15만 원</td></tr>
</table>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td></tr>
<tr><td>3. 휴 업 손 해</td><td>가. 산 정 방 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br>〈용어 풀이〉<br>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br>〈산식〉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br>나. 휴업일수의 인정<br>(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br>(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br>(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br>다. 수입 감소액의 산정<br>(1) 유직자<br>(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br>(나) 실제의 수입 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br>(2) 가사종사자<br>(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br>〈용어 풀이〉<br>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br>(3) 무직자<br>(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td></tr>
</table>

| 항목 | 지급 기준 |
|---|---|
| 3. 휴업손해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br>(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br>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br>(5) 외국인<br>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 |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br>**나. 인정 대상**<br>(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br>(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br>(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br>〈용어 풀이〉<br>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br>**다. 지급 기준**<br>(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br>(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br>(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br>(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2.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br>**가. 입원하는 경우**<br>입원 기간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br>**나. 통원하는 경우**<br>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
| 1급~2급 | 60일 |
| 3급~4급 | 30일 |
| 5급 | 15일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대인배상Ⅰ」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항목 | 지급 기준 |
|---|---|
| 1.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br>**나. 지급 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br>(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br>(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br>(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br>(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br>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1. 위자료</td><td>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br>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br>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table>
<tr><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정액</th></tr>
<tr><td>50%미만 ~ 45%이상</td><td>400만 원</td></tr>
<tr><td>45%미만 ~ 35%이상</td><td>240만 원</td></tr>
<tr><td>35%미만 ~ 27%이상</td><td>200만 원</td></tr>
<tr><td>27%미만 ~ 20%이상</td><td>160만 원</td></tr>
<tr><td>20%미만 ~ 14%이상</td><td>120만 원</td></tr>
<tr><td>14%미만 ~ 9%이상</td><td>100만 원</td></tr>
<tr><td>9%미만 ~ 5%이상</td><td>80만 원</td></tr>
<tr><td>0%초과 ~ 5%미만</td><td>50만 원</td></tr>
</table>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td></tr>
<tr><td>2. 상실수익액</td><td>
가. 산정 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br>
〈산식〉<br>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 상실률) ×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br>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br>
(1) 유직자<br>
(가) 산정대상기간<br>
① 급여소득자 :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장애 발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br>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br>
(나) 산정 방법<br>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함.<br>
(2) 가사종사자<br>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함.<br>
(3) 무직자(학생 포함)<br>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함.<br>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br>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함.<br>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br>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함.<br>
(6) 외국인<br>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함.<br>
다. 노동능력상실률<br>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br>
라. 노동능력상실 기간<br>
사망의 경우 취업 가능월수와 동일함.<br>
마. 라이프니츠 계수<br>
사망의 경우와 동일
</td></tr>
</table>

| 항목 | 지급 기준 |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br>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br>(1)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br>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br>(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br>(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br>(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br>(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br>(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br>(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br>(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br>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br>(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br>(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br>(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br>나. 지급 기준<br>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 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표〉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2016. 3. 31 이전 사고 | 2016. 4. 1 이후 사고 | | 2016. 3. 31 이전 사고 | 2016. 4. 1 이후 사고 |
| 1급 | 2,000만 원 | 3,000만 원 | 8급 | 240만 원 | 300만 원 |
| 2급 | 1,000만 원 | 1,500만 원 | 9급 | 240만 원 | 240만 원 |
| 3급 | 1,000만 원 | 1,200만 원 | 10급 | 160만 원 | 200만 원 |
| 4급 | 900만 원 | 1,000만 원 | 11급 | 160만 원 | 160만 원 |
| 5급 | 900만 원 | 900만 원 | 12급 | 80만 원 | 120만 원 |
| 6급 | 500만 원 | 700만 원 | 13급 | 80만 원 | 80만 원 |
| 7급 | 500만 원 | 500만 원 | 14급 | 80만 원 | 50만 원 |

주) 상해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따릅니다.

〈표〉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다. 후유장애 관련)

|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2016. 3. 31 이전 사고 | 2016. 4. 1 이후 사고 | | 2016. 3. 31 이전 사고 | 2016. 4. 1 이후 사고 |
| 1급 | 1억 원 | 1억 5,000만 원 | 8급 | 3,000만 원 | 4,500만 원 |
| 2급 | 9,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9급 | 2,250만 원 | 3,800만 원 |
| 3급 | 8,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0급 | 1,880만 원 | 2,700만 원 |
| 4급 | 7,000만 원 | 1억 500만 원 | 11급 | 1,500만 원 | 2,300만 원 |
| 5급 | 6,000만 원 | 9,000만 원 | 12급 | 1,250만 원 | 1,900만 원 |
| 6급 | 5,000만 원 | 7,500만 원 | 13급 | 1,000만 원 | 1,500만 원 |
| 7급 | 4,000만 원 | 6,000만 원 | 14급 | 630만 원 | 1,000만 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따릅니다.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항목 | 지급 기준 |
|---|---|
| 1. 수 리 비 용 | 가. 지급대상<br>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br>나. 인정기준액<br>(1) 수리비<br>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br>(*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br>(2) 열처리 도장료<br>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br>(3) 한도<br>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br>(가) 내용연수(*2)가 지난 경우<br>(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br>(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br>(*2)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 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 2. 교 환 가 액 | 가. 지급대상<br>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br>(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br>나. 인정기준액<br>(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br>(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br>〈용어 풀이〉<br>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은 중고차시세정보업체, 중고차매매조합 등의 시세를 참조하여 산정합니다. |
| 3. 대 차 료 | 가. 대상<br>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br>나. 인정 기준액<br>(1) 대차를 하는 경우<br>(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br>(*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br>(*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br>(*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br>(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br>(*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br>(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항목 | 지급 기준 |
|---|---|
| 3. 대 차 료 |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1)의 30% 상당액<br>(*1)"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br>(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br>(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br>다. 인정 기간<br>(1) 수리 가능한 경우<br>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br>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br>(*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br>(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 대상<br>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br>나. 인정 기준액<br>(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br>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br>(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br>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br>다. 인정 기간<br>(1) 수리 가능한 경우<br>(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br>(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br>(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 가. 지급 대상<br>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br>나. 인정 기준액<br>(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br>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br>(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br>다. 인정 기간<br>(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br>(2) 영업손실의 인정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br>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br>나. 인정기준액<br>(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br>(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br>(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 〈별표 3〉 과실상계 등

| 항목 | 지급 기준 |
|---|---|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br>(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

| 항목 | 지급 기준 |
|---|---|
| 1. 과 실 상 계 | (2) 「대인배상 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br>(3) 「대인배상 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br>나. 과실 비율의 적용 기준<br>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손 익 상 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 3. 동 승 자 에 대한 감 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 4. 기 왕 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br>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br>(*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 가. 기준요소

|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상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 수정요소

| 수정 요소 | 수정 비율 |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 ~ 20% |

##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 가.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1,500만 원 | 3,000만 원 | | 1,500만 원 | 3,000만 원 |
| 1급 | 1,500만 원 | 3,000만 원 | 8급 | 180만 원 | 200만 원 |
| 2급 | 800만 원 | 1,600만 원 | 9급 | 140만 원 | 200만 원 |
| 3급 | 750만 원 | 1,500만 원 | 10급 | 120만 원 | 140만 원 |
| 4급 | 700만 원 | 1,400만 원 | 11급 | 100만 원 | 140만 원 |
| 5급 | 500만 원 | 1,000만 원 | 12급 | 60만 원 | 80만 원 |
| 6급 | 400만 원 | 800만 원 | 13급 | 40만 원 | 80만 원 |
| 7급 | 250만 원 | 500만 원 | 14급 | 20만 원 | 80만 원 |

주) 상해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따릅니다.

## 나.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 | 1,5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 1급 | 1,5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 2급 | 1,350만 원 | 2,700만 원 | 4,500만 원 | 9,000만 원 |
| 3급 | 1,200만 원 | 2,400만 원 | 4,000만 원 | 8,000만 원 |
| 4급 | 1,050만 원 | 2,100만 원 | 3,500만 원 | 7,000만 원 |
| 5급 | 9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 6,000만 원 |
| 6급 | 750만 원 | 1,500만 원 | 2,500만 원 | 5,000만 원 |
| 7급 | 6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 8급 | 450만 원 | 900만 원 | 1,500만 원 | 3,000만 원 |
| 9급 | 360만 원 | 72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
| 10급 | 270만 원 | 540만 원 | 900만 원 | 1,800만 원 |
| 11급 | 210만 원 | 420만 원 | 700만 원 | 1,400만 원 |
| 12급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13급 | 90만 원 | 18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14급 | 60만 원 | 12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주) 장애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따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 상해 급별 | 상 해 부 위 | 한도금액 2016. 3. 31 이전 사고 | 한도금액 2016. 4. 1 이후 사고 |
|---|---|---|---|
| 1급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br>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br>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br>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을 동반한상해<br>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br>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이성(회전성) 골절<br>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br>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연부조직을 포함한 경우)을 시행한 상해<br>14.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br>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000만 원 | 3,000만 원 |
| 2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br>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br>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br>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혹은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1,000만 원 | 1,500만 원 |

| | | | |
|---|---|---|---|
| 2급 | 7.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9. 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br>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br>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br>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00<br>만 원 | 1,500<br>만 원 |
| 3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br>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시행한 상해<br>4. 흉부 대동맥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br>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br>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br>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을 동반한 상해<br>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br>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br>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br>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br>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00<br>만 원 | 1,200<br>만 원 |
| 4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br>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br>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해당한다)<br>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을 포함한다)<br>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br>8. 상완골 경부 골절<br>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br>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br>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골절을 말한다)<br>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br>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00<br>만 원 | 1,000<br>만 원 |

| | | | |
|---|---|---|---|
| 4급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br>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br>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br>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br>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br>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br>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4.5퍼센트 이상인 상해<br>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00만 원 | 1,000만 원 |
| 5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br>4. 안정성 추체 골절<br>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br>6. 상완골 간부 골절<br>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br>9. 요골 경상돌기 골절<br>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br>11. 수근 주상골 골절<br>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br>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br>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br>20. 슬개골 골절<br>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br>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br>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br>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br>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br>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00만 원 | 900만 원 |

| | | | |
|---|---|---|---|
| 6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br>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4. 심장 타박<br>5. 폐좌상(일측 폐의 50 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br>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br>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br>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br>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br>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br>18. 요골 경부 골절<br>19. 척골 주두부 골절<br>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br>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br>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br>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상해<br>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00<br>만 원 | 700<br>만 원 |
| 7급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br>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br>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br>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br>5. 쇄골 골절<br>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br>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br>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br>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br>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br>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br>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br>15. 수근부 주상골 · 월상골간 인대 파열<br>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br>17. 다발성 중수골 골절<br>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500<br>만 원 | 500<br>만 원 |

| | | | |
|---|---|---|---|
| 7급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br>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br>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00<br>만 원 | 500<br>만 원 |
| 8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br>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br>3. 외상성 시신경병증<br>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5. 복합 고막 파열<br>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br>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br>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2. 중수골 골절<br>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br>14. 다발성 수지골 골절<br>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br>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br>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br>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br>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40<br>만 원 | 300<br>만 원 |
| 9급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br>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5. 흉골 골절<br>6. 추간판 탈출증<br>7. 흉쇄관절 탈구<br>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br>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1. 수지관절 탈구<br>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240<br>만 원 | 240<br>만 원 |

| | | | |
|---|---|---|---|
| 9급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br>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br>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40<br>만 원 | 240<br>만 원 |
| 10급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br>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br>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br>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br>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60<br>만 원 | 200<br>만 원 |
| 11급 | 1. 뇌진탕<br>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br>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60<br>만 원 | 160<br>만 원 |
| 12급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br>2. 3cm 미만 안면부 열상<br>3. 척추 염좌<br>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br>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br>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0<br>만 원 | 120<br>만 원 |
| 13급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br>2. 단순 고막 파열<br>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br>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0<br>만 원 | 80<br>만 원 |
| 14급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 수족지 관절 염좌<br>3. 사지의 단순 타박<br>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0<br>만 원 | 50<br>만 원 |

### 2. 영역별 세부지침

| 영역 | 내 용 |
|---|---|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 |
|---|---|
| 공통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 · 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 |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
|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 |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
|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 · 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 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 · 하지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 |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염좌(12급)로 본다 |

| | |
|---|---|
| 상·하지 공통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 |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골절 항에 적용한다. |
| |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 |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 |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하지 | 가. 앙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
| |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 |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 |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 |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
| |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장애 급별 | 신 체 장 애 | 한도금액 | |
|---|---|---|---|
| | | 2016. 3. 31 이전 사고 | 2016. 4. 1 이후 사고 |
| 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5. 반신마비가 된 사람<br>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억 원 | 1억 5,000만원 |
| 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br>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br>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9,000만 원 | 1억 3,500만원 |
| 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br>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br>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8,000만 원 | 1억 2,000만원 |
| 4급 |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000만 원 | 1억 500만원 |
| 5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br>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br>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br>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000만 원 | 9,000만 원 |

| | | | |
|---|---|---|---|
| 6급 |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br>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br>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5,000<br>만 원 | 7,500<br>만 원 |
| 7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br>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br>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br>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br>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4,000<br>만 원 | 6,000<br>만 원 |
| 8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br>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br>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br>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br>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3,000<br>만 원 | 4,500<br>만 원 |
| 9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br>2. 한쪽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br>3. 두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br>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br>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2,250<br>만 원 | 3,800<br>만 원 |

| | | | |
|---|---|---|---|
| 9급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8. 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말 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br>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2,250<br>만 원 | 3,800<br>만 원 |
| 10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br>4. 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br>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880<br>만 원 | 2,700<br>만 원 |
| 11급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br>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br>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br>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500<br>만 원 | 2,300<br>만 원 |

| | | | |
|---|---|---|---|
| 11급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500만 원 | 2,300만 원 |
| 12급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br>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br>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br>6.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br>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br>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br>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250만 원 | 1,900만 원 |
| 13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br>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br>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br>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br>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br>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br>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00만 원 | 1,500만 원 |
| 14급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br>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br>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br>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br>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630만 원 | 1,000만 원 |

〈 비고 〉

1. 신체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합니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합니다.
3.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합니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渡)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양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 +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약관

※ 보상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특별약관도 있습니다.

# 특별약관

## Ⅰ.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한하는 특약으로 기명 피보험자와의 관계(가족 또는 부부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한정특약과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연령한정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일부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연령 제한**


[1]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5
[2] 운전자 연령 만 22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5
[3] 운전자 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6
[4]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7
[5] 운전자 연령 만 2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8
[6] 운전자 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9
[7] 운전자 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19
[8] 운전자 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0
[9]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1
[10] 운전자 연령 만 49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122
[11] 운전자 연령 만 5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123


**운전자 범위 제한**


[12]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4
[13] 기명 피보험자 및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5
[1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5
[1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6
[16]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27
[17]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127
[18]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 128

## [1]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비고

**만 21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운전자 연령 만 22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2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2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

**만 22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비고

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3] 운전자 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24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4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4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비고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4]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만 26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6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비고

한도로 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 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5] 운전자 연령 만 2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2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 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6] 운전자 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비고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30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7] 운전자 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만 35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3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35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

*비고

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8] 운전자 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43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만 43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4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43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비고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9]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만 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비고

한도로 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 I 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10] 운전자 연령 만 49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경우(*1)

② 피보험자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경우(*1)

③ 피보험자가 '운전자연령 만35 · 43 ·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1)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에 만4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9세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2)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50세 이상의 자(*3)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모난 당하였을 경우 그 모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주1)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 기타

① 대인배상 I 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운전자연령 만35 · 43 ·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 [11] 운전자 연령 만 5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경우(*1)

② 피보험자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경우.(*1) 단,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험기간 종료일에 만 56세 이상인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운전자연령 만35 · 43 ·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55세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2)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56세 이상의 자(*3)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비고

(*1)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에 만 5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3)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5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주1)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비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①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운전자연령 만35 · 43 ·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 [12]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13] 기명 피보험자 및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기명 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 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와 추가 지정된 지정 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1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비교

**지정 1인 운전자**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명 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비고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1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가족이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 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16]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 I 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17]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에서 선택한 기간에는 해당 운전자를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비고

**가족**이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형제자매**란
기명 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및 그 양자, 양녀, 계자녀로 인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주1)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한 기간'**이란
1~30일 중 선택한 기간을 말합니다.

*비고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란
1.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 포함),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말합니다.

## [18]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당해자동차의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와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대해서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한 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기명 피보험자가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손해

④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의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인 경우 그 피용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특별약관

이 특약들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차량손해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통약관에서 보장되는 내용 이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장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보상 확대


[19]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 · · 130
[20] 상해간병비 지원 특별약관Ⅲ · · · · · · · · · · · · · · · · · 131
[21] 주말 · 휴일 확대 보상 특별약관Ⅱ · · · · · · · · · · · · · · 132
[22] 상급 병실료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132
[23] 성형 · 치아보철 비용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 · · · 133
[24] 안심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 · · · 134


## III.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25] 교통비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 · · 135
[26]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 · · · · · · · · · · · · · · · · · 136
[26-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 · · · · · · · · · · 137
[27] 차량 신규등록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 · · · · · · · · · · · · 138
[28]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 · · 138
[29] 외제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 · · · · · 139
[30]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139
[3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 · · · · · · · 140
[3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 · · 143
[3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Ⅱ · · · · · · · · · · · 146
[34]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 · · · · · · · · · · · · · 149
[35] 차량 하체보호(언더코팅)비용 지원 특별약관 · · · · · · · · · 150

## [19]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②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 보험금 | = | 실제손해액(*2) | + | 비용 | − | 공제액 |
|---|---|---|---|---|---|---|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 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

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 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비고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제계약이란**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단체인 공제조합에 가입된 계약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제에는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조합원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합니다.

(*2) 실제손해액이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별표 1~4)'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대인배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조 용어의 정의 제15항)

###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0] 상해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Ⅲ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었을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병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구 분 | 1급 ~ 3급 | 4급 ~ 6급 | 7급 ~ 11급 |
|---|---|---|---|
| 고급형 | 500만 원 | 200만 원 | 10만 원 |
| 기본형 | 100만 원 | | 10만 원 |
| 실속형 | 100만 원 | | 미지급 |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②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②'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2)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비고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2) 공제액이 실제손해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가족**이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비고

**주말**이란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까지를 말합니다.

**휴일**이란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의 전일(前日) 18:00부터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다음날의 06:00까지를 말합니다.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1] 주말 · 휴일 확대 보상 특별약관 Ⅱ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피해를 입어 '자동차상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상해'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확대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하여진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이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2] 상급 병실료 지원 특별약관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급 병실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을 30일간을 한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이 특약에서 상급 병실이란 특실까지를 의미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위 ①항의 경우에 다른 보험 계약에 의하여 병실료 차액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병실료 차액이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②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②' 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2)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3] 성형 · 치아보철 비용 지원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형비용 및 치아보철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구 분 | 보상 내용 |
|---|---|
| 성형 비용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 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1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 |
| 치아보철 비용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아보철을 하는 경우에는 1대당 20만 원의 치아보철 비용을 지급 |
| | 다만,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비교

(*2) 공제액이 실제손해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가족**이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 부분을 말합니다.

**상지**란
견관절(어깨관절) 이하의 팔 부분을 말합니다.

**하지**란
고관절(엉덩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비고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②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②'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2)

(*2) 공제액이 실제손해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이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4] 안심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내용

① 안심용품 지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1사고당 회사가 정한 1개의 안심용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공 물품 중에서 생산 중단 등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사용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장례용품 지원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여부를 불문하고 1사고당 회사가 정한 장례용품 등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접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례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용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②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②'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2)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④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 ② 장례용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 '①' 내지 '③'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교

(*2) 공제액이 실제손해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5] 교통비 지원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교통비용의 지급

회사가 보상하는 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인정 금액에 임시교통비용 인정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교통비용의 인정 기간]

| 구 분 | 인정 기간 |
|---|---|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

**가족**이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비고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6]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 Ⅱ

외제차량이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21조 보상하는 손해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1조'의 (*1)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종이란 동일한 차종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렌트비용의 지급

회사가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①과 ②를 따릅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 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 하는데 소요된 통상의 요금
②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렌트비용 인정 기간을 한도로 지급함

[렌트비용의 인정 기간]

| 구 분 | 인정 기간 |
|---|---|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
|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하) |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초과 ~2,000CC이하) |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초과) | 다목적승용차 (법정승차정원 7~10인) |
|---|---|---|---|
| 73,000원 | 116,000원 | 224,000원 | 137,000원 |

*비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에 실제 수리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1일 지급한도는 1일당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합니다.

###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6-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은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가입 시 자동 가입됩니다.

### 1.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렌트 비용지원 특별약관Ⅱ'의 2. 보상 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 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제21조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위 '①'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렌트 비용지원 특별약관Ⅱ 4. 렌트비용의 지급' [렌트비용 인정 기간] 중의 사고로서 대여사업자에게서 렌트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렌트비용 인정 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 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 만료일 후인 경우에는 보험 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④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제21조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보상할 위 '① 과 ③'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① 과 ③'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7] 차량 신규등록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도난사고를 제외합니다)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실제로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8] 원격지사고 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외제차량 또한 이 특약의 가입이 가능하나, 운반비용의 한도가 20만원입니다. 외제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반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자 하시면, '외제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피보험자동차를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구분 | 장소 |
|---|---|
| 1. | 기명 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
| 2. | 사고 발생 시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 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

② 회사가 사고당 보상하는 「원격지사고 시 운반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 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 됩니다.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9] 외제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 피보험자가 정한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 발생 시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 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량운반비용」은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수리비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 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을 인정한 것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0]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 개시일의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고

국산차의 경우는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20만원을 한도로 운반하는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비고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보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란**

① 이 특별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2) ①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제 ①항'의 손해액이 다음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이나 자살행위로 생긴 손해
3.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8.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9.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보상합니다.
11. 손해를 입힌 배상의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④ 위 '③'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를 위 '③'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5.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

*비고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고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21조 자기차량손해 보상 내용 참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6. 보상 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및 '〈별표3〉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이 특별약관 '5. 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 될 수 있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중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받은 금액
3.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상 내용'의 손해 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를 신고한 관할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6.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위 '①'의 서류 또는 증거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②'의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②' 또는 '③'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8.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타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또는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②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차량의 등록 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다만,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 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 마모, 부식, 녹, 그 밖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비고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8절 보험계약의 승계의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비고

11.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다른 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5. 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란 다른 자동차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

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6. 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7. 보상 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따라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 8.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③'의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위 '③' 또는 '④'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9. 가지급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

*비고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비고

합니다.

11.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2.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Ⅱ

1. 가입 조건

①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타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또는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②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차량의 등록 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계약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거나 보험계약(공제 포함) 및 피보험자동차의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계약 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⑥ 다른자동차가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대여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보상하는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대여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대여자동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

**다른자동차의 정의**

①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18절 보험계약의 승계의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대여기간이 7일 이내인 것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대여기간의 마지막날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비고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다만,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 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 마모, 부식, 녹, 그 밖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다른 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자동차가 이 특별약관의 '다른자동차의 정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자동차가 이 특별약관의 '다른자동차의 정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비고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5. 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란
다른 자동차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⑤ 다른자동차가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대여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다른자동차의 소유자인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인정기간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 6. 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7. 보상 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따라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 8.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③'의 지급 기일 조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위 '③' 또는 '④'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9. 가지급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 11.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2.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4]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2)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비고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제21조 (*1)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ㄱ.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물체**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비고

(*3)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5] 차량 하체보호(언더코팅) 비용 지원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의 차량의 침수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전부손해를 제외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하체보호(언더코팅)작업을 시공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하체보호(Under Coating)란 자동차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하체에 방청안료(코팅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하, 전기경형) |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초과 ~2,000cc이하) |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초과) | 다목적승용차 (법정승차정원 7~10인) |
|---|---|---|---|
| 2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특별약관

## Ⅳ. 사고처리 시 소요되는 비용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6]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 · · · · · · · · · · · · · · · · 152
[36-1] 벌금제외 추가 특별약관Ⅳ · · · · · · · · · · · · · · 155
[36-2] 방어비용한정 추가 특별약관Ⅳ · · · · · · · · · · · · 155


## Ⅴ. 긴급출동 서비스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차량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7]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 155
[37-1]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 · · · · · · · · · 157
[37-2] 차량 잔단 Door to Door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 · · · · 157


## Ⅵ.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의 납입방법과 결재수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8]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159
[39]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 · · · · · · · · · · 160
[4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160
[41]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 · · · · · · · · · · · · · · 162


## Ⅶ. 친환경 상품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2]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측정장치형) · · 163
[43]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실사형) · · · · 166
[43-1] Eco 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별약관 · · · · · · · · · · 168
[44] Eco e-약관 등에 관한 특별약관 · · · · · · · · · · · · · 169
[45] Eco 리싸이클부품사용 특별약관 · · · · · · · · · · · · · 169
[46]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171


## Ⅷ. 기타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47] 나눔 친서민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 173
[4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 · · · · · · · · · · · 175
[49]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 · · · · · · · · · · · · · 176
[50]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 · · · · · · · · · · · · · 177
[51] 기계 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 · · · · · · 177
[52]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 · · · · · · · 177
[53] 차량용영상기록장치에 관한 특별약관(무선통신형) · · · · · 178
[5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 · · · · · · · · · · · · 180
[55]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우대 특별약관 · · · · · · · · 181
[5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 · · · · · · · · · 181
[57]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182
[58] 자녀사랑 할인 특별약관 · · · · · · · · · · · · · · · · · 183
[59]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 · · · · · · · · · · · · · 183
[60]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 · · · · · · · · · · 184
[61]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 · · · · · · · · · · · 185
[62] 티맵 착한운전 할인 특별약관 · · · · · · · · · · · · · · · 186
[63] 애니핏 걸음수를 활용한 할인 특별약관 · · · · · · · · · · 187

*비고

## [36]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

### 1.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은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보상 내용 |
|---|---|
| 1.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약식기소 제외)<br><br>[ 방어비용 보상 한도액 ]<br>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고급형<br>보상 한도 / 2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br><br>다만,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서 법원에서 공판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따라서 정식 재판이 청구되는 경우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방어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2. 형사합의금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아래 표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의 상해급수별 보상 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단, 1) 내지 3)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br>1)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을 사망케 한 경우<br>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br>3)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1. 신호 ·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추월방법위반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6. 횡단보도사고
9. 인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12.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가 해당되며,
7. 무면허사고
8. 주취/약물복용사고는 제외

| 구 분 | 보상 내용 |
|---|---|
| 2. 형사합의금 | (2)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br>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br>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br>[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 ]<br>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고급형<br>사망의 경우 / 2,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br>상해 1~3급의 경우 / 5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br>상해 4~7급의 경우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br>주)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릅니다.<br>[ 용어풀이 ]<br>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 3. 벌금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만 원 한도로 지급<br>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고급형<br>벌 금 / 2천만 원 한도 |

*비고

③ 한 사고로 제2항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비고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란 운전자 연령 제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전할 자의 연령과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전할 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3조, 제34조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피해자가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통약관 제7조의 피보험자 중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보험금의 분담

'1.보상 내용 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보험계약과 보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

## 5.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1) 위 '1. 보상내용 ②'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3.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5.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방어비용 지불 증빙 서류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위 1. 보상내용 ②의 '2. 형사합의금 (2)'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6. 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기명 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6-1] 벌금 제외 추가 특별약관Ⅳ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의 '보상내용 ②의 3.'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36-2] 방어비용 한정 추가 특별약관Ⅳ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의 '보상 내용 ②의 2 내지 3.'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37]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애니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애니카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애니카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구난 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3.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과 보상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긴급견인 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 시 교체에 따른 부품 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본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6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2.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과 보상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차량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비상급유 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



**비상급유 서비스**

상급유를 하여 드리며, 본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2회(고급형은 3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이 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는 일반휘발유, 경유에 한합니다. 다만,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2. 엘피지(LPG)차량 및 연료전지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구동용(고전압)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시동용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시적으로 시동용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제조사의 전기자동차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해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부분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펑크의 크기, 모양, 위치에 따라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외제차량 및 국산차량중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 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1. 적재정량 2. 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이란 구난 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 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5. 특별약관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애니카서비스를 6회(고급형은 10회)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동특약을 부보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애니카서비스를 3회 받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환급이 없습니다.

7.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비고

## [37-1]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의 '2. 애니카서비스의 내용' 중 '긴급견인서비스'의 규정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견인서비스10km에 추가 4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추가 4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37-2] 차량 진단 Door to Door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업체는 약정한 시기에 이 특별약관 〈별표1〉 차량 기본점검 서비스 세부항목에 기재된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표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비고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차량자기진단장치(이하 "무선통신 차량자기진단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한 경우에 차량자기진단장치로 부터 제공되는 진단결과에 대해 추가로 〈별표2〉차량진단서비스 세부항목에 기재된 항목 중 이상 부위를  점검하고 그 결과표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③ 차량 진단 후 피보험자가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 정비업체는 수리 완료 후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하여드립니다. 다만, 수리시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④ 출장진단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2회에 한하여 제공 됩니다(단, 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동특약을 부보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공 됩니다)

*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 이란 : 피보험자의 차량 진단 편의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수 및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인수 및 인도 장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 출장점검 이란 : 〈별표2〉 차량진단서비스 세부항목 중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무선차량자기진단장치를 통해 확인된 이상 항목에 대해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인수하여 이를 점검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차량 기본점검 서비스

| | | | |
|---|---|---|---|
| 엔진오일 | 미션오일 | 브레이크오일 | 클러치액 |
| 부동액 및 냉각수 | 얼터네이트 | 배터리 | 각종 호스 |
| 브레이크라이닝(전) | 브레이크라이닝(후) | 타이어(예비포함)공기압 | 경음기 |
| 에어컨 | 히터 | 와이퍼브러쉬 | 워셔액 |
| 파워오일 | 벨트류 | 주차브레이크 | 각종 램프류 |

〈별표2〉 차량진단 서비스 세부항목

| | | | |
|---|---|---|---|
| 노크센서 | 시스템전압(배터리) | 연료주입 | 차속센서 |
| 레일연료압력 센서 | 에어플로우 센서 | 연료펌프 릴레이 | 캠샤프트 센서 |
| 매니폴드압력 센서 | 엔진 냉각수온센서 | 연료혼합센서 | 크랭크포지션센서 |
| 발전기(제너레이터) | 엔진오일압력센서 | 옵티컬센서 | 파워스티어링 압력센서 |
|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 엔진오일온도센서 | 이그니션 코일 | 흡입 공기온 센서 |
| 배터리 온도센서 | 엔진회전수 센서 | 인젝터 | 연료 누출 |
| 산소센서 | 엔진회전수 입력회로 | 점화코일 | |
| 스로틀포지션 센서 | 연료온도센서(FTS) | 증발가스 제어장치 | |

## [38]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비고

### 1. 보험료의 분할 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 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분할 보험료의 납입 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분할 보험료의 납입 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최고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 최고 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③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문서(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문서로 안내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주소를 위 안내 문서를 보낼 주소로 봅니다.

2. 회사가 '1.'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문서(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 ②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 5. 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3. ②'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

*비고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9]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3.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 4.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 적용 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2. 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에 따라서 자동이체로 분할 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 일자(이하 '약정 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위 ②의 약정 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 가능한 날짜 중에서 보험료 납입 기일 후에 처음 오는 이체일을 말합니다. 다만, 첫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할 경우의 첫 회 보험료 약정 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 전의 이체일을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 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습니다.

*비고

### 3. 분할 보험료의 납입 유예 및 납입 최고

① 회사는 분할 보험료가 약정 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 이체일부터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 유예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 유예 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첫 회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 유예 기간이 없으며, 책임 개시일자 이전까지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11회납의 경우, 11회보험료가 약정 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 이체일부터 1개월간의 납입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약정 이체일이 책임개시일부터 10개월이 되는 날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10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의 납입 유예 기간을 둡니다.

③ 회사는 약정 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1. 회사는 위 '①'의 납입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 전까지 문서(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2. 회사가 '1.'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 유예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위 '①' 및 아래 '⑤'의 내용을 문서(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납입 유예 기간 말일까지 분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 유예 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 유예 기간

| 납입방법 \ 미납보험료 |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
| 비연속 | 2회납 | | | | | 1개월 | | | | | | |
| 연속납 | 2회납 | 4개월 | | | | | | | | | | |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 | | | | | | |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 | | | | | |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 | | | | |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 | | | | |
| | 10회납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
| | 11회납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 유예 기간 1개월은 2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비고

시기(始期)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시점을 말합니다.

## [41]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 1. 적용 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보험 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 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2.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①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3. ②'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위 '①'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 만료일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약관,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또는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 3. 보험료의 납입 유예

①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 만료일부터 30일(이하 "납입 유예 기간"이라 합니다.)안에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유예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까지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 유예 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의 사고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

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5. 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①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2]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측정장치형)

###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비고

**운행정보확인장치**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 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비고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 의 '②' 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일 이내에 '②' 의 규정에 따라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②' 의 규정에 따라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4. ① (보험료 정산 환급)' 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만일 해당 은행계좌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②' 의 정보를 정해진 기한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②' 내지 '⑤' 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1.' 가입대상의 ③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②' 또는 '⑤' 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탈부착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유 및 기간을 입증한 경우

2.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피보험자동차로부터 분리한 후 다시 부착한 시간이 24시간 이내이면서 보험기간 중 2회 이하인 경우

⑤ 운행정보의 누락 또는 훼손 등으로 정확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③'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2. ⑥'의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연간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실적산정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②' 및 '③'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연간주행거리 실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주행거리 – 최초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예) 2018.09.01 최초 주행거리 15,000km, 2019.08.26 최종 주행거리 22,050km 일 경우, – 연간 주행거리 = (22,050 – 15,000) ÷ 359 × 365 = 7,168km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2. ④' 또는 '⑤'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내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2.'③'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 구 분 | 적용보험료(*1)의 |
|---|---|
| 3,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5,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7,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10,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12,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12,000km 초과 | 0% |

*비고

(*1) **적용보험료**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비고

## [43]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실사형)

###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시점의 피보험자동차의 누계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 등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당해 시점의 누계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누계주행거리**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에 장착된 계기에 표시된 수치 가운데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누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수치는 km 단위로 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 (보통약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이후 3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의 누계주행거리와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누계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4. ①'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만일 해당 은행계좌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①'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누계주행거리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①내지 ③'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

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의 ③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료의 정산 환급 등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②'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특별약관 '2 ④'의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연간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실적산정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연간주행거리 실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비고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예) 2018.09.01 최초 주행거리 15,000km, 2019.08.26 최종 주행거리 22,050km일 경우, – 연간 주행거리 = (22,050 – 15,000) ÷ 359 × 365 = 7,168km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2. '②'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내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5. 기타사항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주행거리를 특별약관 2. '②'의 주행거리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 4. '①'의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에게 송금할 보험료 산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 구 분 | 적용보험료(*1)의 |
|---|---|
| 3,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5,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7,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10,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12,000km 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 12,000km 초과 | 0% |

*비고

(*1) **적용보험료**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43-1] Eco 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별약관

### 1. 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직전보험계약(*1)'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직전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기간 종료일이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일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2. 적용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의 '직전보험계약'에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고, 해당 특별약관의 정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위 ①의 정산금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 3. 보험료의 정산

'직전보험계약'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2.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직전보험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당해 시점의 누계주행거리를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는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확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실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 경우, '직전보험계약'의 Eco 마일리지 보험료 정산금액은 보험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별도 송금하지 않습니다.

### 4. 적용 제외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3. 보험료의 정산'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직전보험계약'의 종료일 이전에 Eco 마일리지 보험료 정산금액을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지급받기를 요청한 경우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4] Eco e-약관 등에 관한 특별약관

*비고

### 1. 적용 대상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우편만을 통하여 이 보험계약 자료를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자료'란 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 2.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위 '①'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정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로 보험계약 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3. 보험계약 자료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보험계약 자료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 자료를 교부된 날부터 1개월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전자우편을 통해 보험계약 자료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계약자 및 회사의 권리와 의무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 기간에 각종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험계약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5] Eco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 1. 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정원 10인이하의 승용자동차이고,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1장 2절 대물배상, 2

장 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보통약관 '1장 2절 대물배상', '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실제 수리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 4. 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1장 2절 대물배상', '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1장 2절 대물배상', '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할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하였으나 리싸이클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리싸이클부품을 새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 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리싸이클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등의 사유로 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리싸이클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 1장 2절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2장 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 리싸이클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의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비고

**새 부분품 가격**이란 AOS(Areccom On-line System)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한 경우**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 또는 보험회사가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리싸이클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공급받아 법정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고부품〉
사이드 미러, 프론트 휀다,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패널,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 센서

〈재제조품〉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 [46]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1. 가입 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정보(이하 "운행 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 정보 확인 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 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 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별약관 가입 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별약관 가입 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 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 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의 모델명, 제품 식별 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①'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3. 운행 정보의 송부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 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 정보 확인 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 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 정보 확인 장치 부착일이 보험 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2. '①'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 기간에 운행 정보 확인 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 정보 확인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정보 확인 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①'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 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 정보를

*비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란
피보험자동차가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운행정보 확인 장치**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 여부를 포함한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비운행 약정 요일**이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약정한 비운행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비고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 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3. '②'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5.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③'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 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 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②'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운행 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 요일의 피보험자동차 운행일수가 3일 이하[1]인 경우는 운행 정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2]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 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② 비운행 약정 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 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 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3. '③'과 '④'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2.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운행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④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 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운행 정보의 미송부 또는 지연 송부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운행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 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 정보 확인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4. 이 특별약관 3. '③'과 '④'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⑤ 보험계약자는 위 '①'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7. 비운행 약정 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 요일은 보험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

주1) 이 특별약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합니다

주2) 의무보험 가입 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추가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8.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 금액

| 보험료 정산금액 |
| --- |
| 적용보험료(*1)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

회사는 보험 기간 만료일 후 운행 정보를 받은 날(보험 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드리지 아니합니다.

*비고

(*1) **적용보험료**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47] 나눔 친서민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② 기명 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기명 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 시점에서 만 30세 이상일 것
2.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기명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3.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4. 기명 피보험자에게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5. 기명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 시점에 만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위 '4'의 부양자녀 조건은 적용하지 않음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2019. 6. 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의경우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비고

2.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을 것
3.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④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 2. 가입 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1. '①'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② 이 특별약관 1. '②'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1.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수입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3.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 증명원 (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없음)
5.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6. 기명 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본

③ 이 특별약관 1. '③'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단, 당사 갱신계약으로 2년 이내에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수입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6.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 증명원 (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없음)
7.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기명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④ 이 특별약관 1. ④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서류

1.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2.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수입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4.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5.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 증명원 (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없음)
6.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기명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 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2장 2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① 또는 ②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비고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 경·3종 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교체(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교체(대체)자동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비고

**운전가능 연령범위**란
운전자 연령 제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전할 자의 연령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전가능 범위**란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전할 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49]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1. 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 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Ⅰ 및 자배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 '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로 봅니다.

### 3. 보상 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 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대물의무보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승계
제48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② 회사는 위 '①'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보통약관
제42조 보험 기간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 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 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위 '①'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0]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 승용자동차 또는 구급자동차 중 승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제8조 ①의 6, 제14조의 7, 제19조의 7, 제23조의 5'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1] 기계 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 [52]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고

**운전가능 범위**란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전할 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전가능 연령범위**란
운전자 연령 제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전할 자의 연령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기요율**이란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비고

②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 체결 전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경력이 있거나 영상기록장치의 사진 및 영상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영상기록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기록장치의 제조사, 모델명, 제품번호, 제품가격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험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영상기록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1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1. 가입조건 제②항'의 가입제한사항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②항 내지 제④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3] 차량용영상기록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무선통신형)

1. 가입조건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무선통신 영상기록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 체결 전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경력이 있거나 영상기록장치의 사진 및 영상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합니다.

*비고

## 2. 보험회사의 사고 확인 및 접수 서비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무선통신 영상기록장치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통해 인지할 수 있고 동시에 해당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의할 경우 해당 사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부착하고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영상기록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1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1. 가입조건 제②항'의 가입제한사항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②항 내지 제④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비고

## [5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통약관의 기명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나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1]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2]이 있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이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의 '①'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하며, 동일한 순서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 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인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은 1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이 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의 직계비속
3. 기명피보험자의 직계존속
4.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5. 기명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3.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보험회사 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2. ②'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② '3.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의 '①'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주1) 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2) 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55]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우대 특별약관

*비고

###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 '①' 부터 '③' 까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③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결과지의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지의 '운전능력검사결과표' 종합판정이 1~3등급인 경우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1]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1) 서류 발급일로부터 보험기간의 첫날까지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경우 2년,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

###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주1]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①'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지급기준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

주1)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비고

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③'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위 '①'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2',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4'에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7]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2. 보상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1사고당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보상 한도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 | 5억원 | 10억원 | |

② 이 특별약관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과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을 준용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사람

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8] 자녀사랑 할인 특별약관

###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에게 태아(*1) 또는 만5세이하(*2)의 자녀(*3)가 있는 경우

② 다음의 특별약관 중 하나에 가입한 경우

1.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2.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조(가입대상)의 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다른 보험계약 등을 통해 '제1조(가입대상)의 ①'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보험기간

위 '제1조(가입 조건) ②'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4.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9]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1)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2)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비고

(*1) 태아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로써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전을 임신한 날로 간주하여 임신한 날을 기준으로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작일 현재 만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를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②항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비고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 또는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2. 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6.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 ·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60]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1)를 장착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첨단안전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첨단안전장치'란 차량 출고시 장착된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하며,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전방충돌방지장치 :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또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를 말합니다.

2. 차선이탈방지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 Lane Keeping Assist System)를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비고

###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단안전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첨단안전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5. 할인보험료의 반환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61]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 2. 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비고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4. 전환 취소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5. 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 [62] 티맵 착한운전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1)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에 안전운전점수(*2)(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3.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4. Eco마일리지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5.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고 합니다)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 받

(*1)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500km 이상 주행하였을 때 산정된 점수로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단, 이 점수는 확인일 기준 직전 6개월 이내의 점수에 한정합니다.

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 간의 제휴사업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점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비고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자 등은 특별약관 가입 시 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 3.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의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1. 가입대상 ① 3'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자 등은 '3.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즉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① 회사는 점수 산정을 위한 안전운전프로그램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

###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63] 애니핏 걸음수를 활용한 할인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소유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걸음 측정 프로그램(*1)을

(*1) 회사가 인정하는 걸음 측정 프로그램이란, '삼성화재헬스리워드애니핏'을 말합니다.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에 걸음 측정 프로그램의 걸음수가 회사가 정한 걸음수 기준(*2)을 충족하는 경우
3.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걸음수가 아닌 경우 또는 걸음수를 조작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무효 등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보험료의 할인

①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1. 가입대상 ① 3'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회사가 확인한 기명피보험자의 걸음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걸음수가 아닌 경우 또는 걸음수를 조작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2. 보험료의 할인'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즉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비고

(*2) 회사가 정한 걸음수 기준이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직전 13주(91일)를 평가하여 주중(월요일 0시에서 금요일 24시까지)1일 6천보를 50일 이상 달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고

## 자동차보험약관 인용 법조문

* 본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의 해당 조문입니다. 세부내용은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조문을 따릅니다.

### 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ㄷ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ㅅ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 공제로서 보험 · 공제계약 또는 보험료 · 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 공제로 표시된 보험 · 공제의 보험료 · 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 보증 · 공제의 보험료 · 보증료 · 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 ·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ㅌ

##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 물가 · 인구 · 주택 · 문화 · 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 ·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 · 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ㅎ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

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찾아보기(색인)

이 약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용어정의로서 보통보험약관 및 특약조항의 내용과 정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ㄱ

### (그) 가족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 공제계약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단체의 공제에 가입한 계약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계약

###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 급여소득자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사람

###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ㄷ

## 다른 자동차

자가용자동차로서 보험가입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험가입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ㅁ

##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만 **세 미만의 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세 미만의 사람

## 면책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나, 특정의 사안(예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은 예외로 하여 그 의무를 면함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함

##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음

ㅂ

##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상 내용 및 보험 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

##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 한도액)

## 보험금

자동차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 보험료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1.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3.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배상의무자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ㅅ

## 상지

견관절(어깨관절) 이하의 팔 부분

## 상해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 소지품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 가방 및 골프채 등

## 시기(始期)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시점

##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1. 신호 ·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추월방법위반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사고
8. 주취/약물복용사고
9. 인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사고
12.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

## 실제 손해액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함

## ㅇ

### 안면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 부분

### 유상운송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 또는 사용하거나 임대 · 대여하는 것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함

###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I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대물의무 보험금액")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함.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함

### 이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ㅈ

###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1.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 포함),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2. 보험가입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동차를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 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의무가입의 근거가 되는 법

### 전부손해

보험가입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

### 주말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까지

###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ㅊ

### 친족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

## ㅌ

###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ㅍ

## 피보험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사람, 즉 보험금 청구권자를 말함

ㅎ

## 하지

고관절(엉덩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 휴대품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 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휴일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의 전일(前日) 18:00 ~ 다음날 06:00까지를 말함

※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타]
전　　화 :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타]
전　　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
전　　화 : 1588-5114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 면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 전 화 : 1588-5114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 주소 ·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서 면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 전 화 : 1588-5114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 면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 전 화 : 1588-5114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신용평가정보(주) – 전 화 : 02-2122-4000 – 인터넷 : www.nice.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전 화 : 02-3445-5000 – 인터넷 :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전 화 : 02-708-6000 – 인터넷 : www.kcb4u.com

##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 · 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4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협회 : 02-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 금감원 :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본 약관은 100%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인쇄물입니다.

#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즉시 정차**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br>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
| **부상자 구호** | 부상상태 확인.<br>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 조치 후 구급차량으로 후송. |
| **정황증거 확보**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핸드폰, 카메라 등).<br>사고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등).<br>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
|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 정황증거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br>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br>차량을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
|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br>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br>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24시간 365일 사고 접수 및 상담**
지역번호없이 1588-5114 (사고접수 ARS 1번)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www.samsungfire.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